

2023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 합동 기동감사 결과



전라남도
JeollaNamdo
[감사관실]

2023년 상반기 건설현장 민관합동 기동감사 결과

도내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구현과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기동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6조

1 감사실시 개요

- (기간) '23. 6. 7.(수) ~ 6. 23.(금)
- (대상) 본청 및 11개* 시·군, 16개소¹⁾(도 5, 시·군 11)
 - 5억원 이상 425개소(도 78, 시·군 334, 민간 13) 중 준공예정일, 공정률, 민간전문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시·군별(1개소) : 목포, 순천, 나주, 구례, 장흥, 영암, 무안, 함평, 완도, 진도, 신안
- (감사반) 2개 반 21명 - (총괄) 기술감사팀장
 - (전남도) 5명, (민간전문) 총 20명 중 16명 분야별 참여

2 감사 중점사항

- (설계도서) 건설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정성, 공사원가 산정 및 설계변경 사항, 주요 자재 반영 적정 여부 등
- (시공·품질·안전관리) 계획공정의 적정성, 주요 구조물 시공 상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실행 상태 등
- (현장관리 등) 현장기술자 배치 및 근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 의무사항, 하도급 관리 등
- (민간전문가 참여) 현장 감사와 기술자문²⁾ 병행 실시

1) 도로(2), 하천(3), 건축(4), 상·하수도(3), 해양(1), 택지 등 기타(3)

2) 6개 분야 16건(우기대비 안전 취약구간 시설물 보완 등 안전대책 수립,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 전반사항 등)

3

감사 결과

【총 평】

- (민·관합동 기동감사 실시) 5억원 이상 도 본청 및 시·군 16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 감사관’ 16명이 참여하였음
 - ▶ (낭비성 예산 집행 사전 예방) 사업장별 시공·품질·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과 부당한 설계변경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및 견실시공 정착) 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실·조잡 시공이나 우기대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
 - (도 신뢰도 향상 도모)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에 노력
- * 중·소규모 현장 품질·안전관리와 예산 배정, 기술분야(토질, 구조 등)

【처분 요구사항】

(단위 : 건, 명, 백만원)

총계 (가:나)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합계 (가)	징계	훈계	합계 (나 =A:D)	시 정							주의 (B)	개선 (C)	통보 (D)
					계 (A =a+b)	재정상 처분(백만원)					재정상 처분외 시정 (b)			
						소계 (a)	회수	감액	재시공	보완 시공				
22	- -	- -	- -	22	17 (515)	17 (515)	- -	16 (512)	1 (3)	- -	-	5	-	-

※ '22년 하반기 기동감사(16건) : 22건 처분(훈계 2명, 414백만원 감액)

4

처분 목록

구분 연번	대상 기관	지적 및 처분 내역	감사자 (명)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천원)	
계	본청 및 11개 시·군 등	지적 16건 / 처분건수 22건	21 (민간 16)	-	시정 17 주의 5	17건 감 액 512,094 재시공 3,240

구분 연번	대상 기관	지적 및 처분 내역	조치계획(안)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천원)	
1반		지적 8건 / 처분건수 12건	-	시정 9 주의 3	9건 감 액 326,476 재시공 3,240
1	본청 ○○○○과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84,564
2	전남 개발공사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18,368
3	신안	○○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2	감 액 71,095 재시공 3,240
4	완도	완도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15,969
5	영암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38,686
6	목포	목포 ○○○ ○○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3,721
7	구례	○○천 하천재해예방사업(3단계)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35,410
8	순천	순천 ○○○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38,663
2반		지적 8건 / 처분건수 10건	-	시정 8 주의 2	8건 감 액 185,618
1	본청 ○○○○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32,198
2	무안	무안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25,050
3	본청 ○○○○과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8,000
4	함평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주의 1	감 액 13,513
5	나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12,830
6	장흥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5,770
7	진도	○○면 ○○○○○공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42,550
8	전남 개발공사	여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추진 부적정		시정 1	감 액 25,707

1 [본청 ○○○○과]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 전라남도(○○○○과)는 '21. 7.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무안군 ○○면 일원에 ○○천 하천재해예방사업(16,049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도(○○○○과)는 '23. 6. 23. 감사일 현재 교량 특허기술사용료 계상 등*으로 8,45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호안공 되메우기 및 다짐(기계 90% + 인력 10% → 기계 100%)

☞ 과다 계상된 사업비 8,45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2 [전남개발공사]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 추진 부적정

- 전남개발공사(○○○○처)는 '22. 2.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 읍 일원에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3,832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어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처)는 '23. 6. 23. 감사일 현재 기준틀 부족시공 (33개소→8개소), 가설울타리 정산(153m→124.3m) 등*으로 1,69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등에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처)는 '23. 6. 23. 감사일 현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증빙자료(A형 클립웬스, BT난간대 등)가 미첨부된 137만원을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은 채 미조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836만원을 감액 및 정산하도록 "시정요구"

③ [신안군] ○○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신안군(○○과)은 '20. 11.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읍 일원에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4,110백만원)를 추진

1. 도로포장 단면(보조기층) 조정 등 설계변경 미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한국형포장설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포장 보조 기층 단면 두께를 15cm로 적용하여야 하나, 20cm로 과다 반영하는 등* 으로 7,10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

* 세륜기 미설치, 구조물 시공(합판4회 → 유로폼)

2. 교량 접속구간 불량토 치환공 미조치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토공사편의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에 따르면 순성토 구간에 흙쌓기의 재료가 불량하여 치환이 필요할 때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교량 접속구간 토공의 다짐상태가 [사진]과 같이 부적합할 경우 양질의 재료로 치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

* 치환(재시공) : 210m³/324만원

교량 접속구간 민간합동 기동감사 현장점검(2023. 6. 12.) - 불량토 치환공 미조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7,109만원을 감액하고, 교량 접속구간 불량토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을 실시하는 등 재시공토록 "시정요구"

4 [완도군] 완도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 완도군(○○○○○○관)은 '20. 12.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완도 ○○○○센터 건립공사(23,222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은 '23. 6. 23. 감사일 현재 조립식가설대문 미설치, 규준틀 부족시공(57개소→10개소) 등*으로 1,59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석재면보양 및 방수층보호재 미시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2조 등에 공사 관리관은 분기별 합동점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검사를 실시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 공사관리관은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합동점검 8회와 기성검사 7회를 미참석하는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59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공사관리관은 합동점검 및 기성·준공검사에 참석하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⑤ [영암군]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영암군(○○○○소)은 '21. 7.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14,083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6. 23. 감사일 현재 세륵시설 미설치 등*으로 3,868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맨홀명판 설치 삭제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868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⑥ [목포시] 목포 ○○○ ○○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 추진 부적정

- 목포시(○○○○○○단)는 '22. 9.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동 일원에 목포 ○○○ ○○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6,819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단)는 '23. 6. 23. 감사일 현재 가설창고 부족설치(5개소→4개소),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미시공($1,878\text{m}^2 \rightarrow 965\text{m}^2$) 등*으로 2,372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공사관리관은 분기별 합동점검에 참석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단) 공사관리관은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합동점검 3회 모두를 미참석하는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372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공사관리관은 분기별 합동점검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7 [구례군] ○○천 하천재해예방사업(3단계) 추진 부적정

- 구례군(○○과)은 '23. 1.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천 하천재해예방사업(15,812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6. 23. 감사일 현재 현지 여건 상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등*으로 3,54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퇴메우기 및 다짐(기계 90% + 인력 10% → 기계 100%), 전석활기 수량 오류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541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8 [순천시) 순천 ○○○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순천시(○○○○과)는 '22. 7.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동 일원에 순천 ○○○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18,445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과)는 '23. 6. 23. 감사일 현재 사토 운반거리 정산 (10km→5.8km)등*으로 3,866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천장패널 전적단가 경비 처리, 자재운반비 정산, 규준틀 미시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조 등에 공사 관리관은 분기별 합동점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과) 공사관리관은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합동 점검 3회 중 2회, 기성검사 3회 모두를 입회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866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공사관리관은 합동점검 및 기성·준공검사에 참석하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① [본청 ○○○○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전라남도(○○○○과)는 '20. 4.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7,784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어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도(○○○○과)는 '23. 6. 23. 감사일 현재 가시설공 조정(PP마대 → 톤마대) 등*으로 3,219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현장시설공 면적 조정(430㎡ → 357㎡)

☞ 과다 계상된 사업비 3,21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② [무안군] 무안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무안군(○○○○과)은 '20. 11.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무안 ○○ 산업단지 조성공사(12,967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어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6. 23. 감사일 현재 되메우기 및 다짐 장비 조정(콤팩트→진동로울러) 및 세륜세차시설 조정(2개소→1개소)으로 2,505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등에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 합동 점검을 분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분야별 기술지원 기술인 3명이 합동점검을 총 30회 중 5회* 미실시
 - * 도시계획 1회, 전기 2회, 조정 2회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505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분기별 합동점검 실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③ [본청 ○○○○과]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추진 부적정

- 전라남도(○○○○과)는 '21. 9.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고흥군 ○○읍 일원에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36,367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도(○○○○과)는 '23. 6. 23. 감사일 현재 접안시설공 기초굴착 조정(9,203㎡→8,553㎡) 등*으로 2,80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불특제작 부지임대료 감액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80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④ [함평군]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함평군(○○○○○소)은 '21. 9.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4,416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6. 23. 감사일 현재 사토 운반거리 정산(10.0km→2.3km)으로 1,351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노면표시가 포함된 공사는 노면표시 기준*에 맞게 휘도**를 측정하여 검사성적서 확인 후 준공하도록 규정
- * (백·황색) 240-150mcd/(㎡·lx) 이상 ** (노면표시 반사성능) 광원의 밝은 정도를 나타내는 양
- 그런데 위 군(○○○○○소)은 '23. 6. 23. 감사일 현재 1차분에 대한 차선 도색공사 후 휘도 검사를 미 실시하였는데도 준공검사 실시

☞ 과다 계상된 사업비 1,351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노면표시가 포함된 차선도색에 대하여 휘도검사 후 준공을 처리하도록 "주의요구"

⑤ [나주시]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나주시(○○○○과)는 '20. 1.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소하천 정비공사(5,968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시(○○○○과)는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시공상세도 미작성 (35장)으로 1,283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과다 계상된 사업비 1,283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⑥ [장흥군]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장흥군(○○○○소)은 '20. 7.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6,148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여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소)은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사무소 규모 미정산(430㎡→410㎡) 및 물푸기 미시공으로 577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과다 계상된 사업비 577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7 [진도군] ○○면 ○○○○○공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진도군(○○○○과)은 '22. 6.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면 일원에 ○○면 ○○○○○공원 정비사업(2,806백만원)을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어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과)은 '23. 6. 23. 감사일 현재 되메우기 및 다짐 시 다짐장비(콤팩트) 미시공 및 이동식세륜기 삭제 등*으로 4,255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유준틀, 층따기 미시공 등 8개 공정

☞ 과다 계상된 사업비 4,255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8 [전남개발공사] 여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추진 부적정

- 전남개발공사(○○○○단)는 '20. 5.부터 '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리 일원에 여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38,285백만원)를 추진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건설공사 추진 시 현지어건과 설계 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공사(○○○○단)는 '23. 6. 23. 감사일 현재 오수공 되메우기 장비 변경(램머→콤팩터), 경고테이프 연장 조정(28.754km→19.168km) 등*으로 2,57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
 - * 절토사면 배수공 조정, 관보호공 몰탈 형식변경(현장비빔→기성제품)

☞ 과다 계상된 사업비 2,570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처분요구서 】

목 차

【1반 - 8건】

①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6
②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9
③ ○○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2)	23
④ 완도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정적(시정, 주의)	27
⑤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31
⑥ 목포 ○○○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34
⑦ ○○천 하천재해예방사업(3단계) 추진 부적정(시정)	38
⑧ 순천 ○○○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41

【2반 - 8건】

①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45
② 무안 ○○○○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48
③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52
④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주의)	55
⑤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59
⑥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62
⑦ ○○면 ○○○○○공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65
⑧ 여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추진 부적정(시정)	68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는 지방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21. 12. 10.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L=2.76km	16,049	8,404	7,645	2021.12.10.~ 2025.03.23.	○○○○(주) (○○○)	공사
○○,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1,949	1,949	-	2021.11.01.~ 2024.12.11.	(주)○○○○○○○ 외 1개사 ¹⁾ (○○○)	감리

자료 : 전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1) (주)○○○○기술(○○○ / 55%), ○○○○개발(주)(○○○ / 45%)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설계서²⁾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현장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종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라남도(○○○○과)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10개소³⁾의 특허공법 기술보유자가 직접 참여한 경우 기술사용료 제외 등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84,564천원을 감액 설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90,337	-	5,773	△ 84,564	
1	특허기술사용료 제외	10개소	82,694	-	-	△ 82,694	
2	호안공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90%+인력10%→기계100%)	890m ³	7,643	890m ³	5,773	△ 1,870	既 시공분

자료 : 전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된 84,564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2023. 6. 23. 감사일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84,564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과)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과장)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84,564,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약곡1교 등 6개소 거터, 약곡1교 가교 1개소, 약곡1교 등 3개소 기초말뚝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개발공사(○○○○처)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개발공사는 노후한 기숙사의 철거 및 증축을 통해 소속 의료진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 2. 18.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의료원 기숙사 건축사업	1동, 1,877㎡	3,832	3,121	711	2022.02.18.~ 2023.08.11.	○○○○○ ○○(주) (○○○)	공사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축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개발공사(○○○○처)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16,99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4건	-	44,544	-	27,551	△ 16,993
1	기준틀 미시공	33개소	4,637	8개소	1,644	△ 2,993
2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1,874㎡	11,543	1,874㎡	8,124	△ 3,419
3	가설울타리 정산	153.0m	13,797	124.3m	11,348	△ 2,449
4	터파기 정산 (기계90%+인력10%→기계100%)	2,293㎡	14,567	2,293㎡	6,435	△ 8,132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 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기준²⁾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한 같은 기준 제9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위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개발공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기성 요청 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 환경 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1~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86%까지 적용함
- 2)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등
2. 안전시설비 등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임대비용
3. 보호구 :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원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개발공사(○○○○처)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 [표 3]과 같이 증빙자료를 미첨부하여 집행하였는데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375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 요구하지 않고 있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 적 내 용	감액·반환 대상 금액	비 고
계	4건	1,375	
1	2022년 6월 증빙자료 미첨부(A형 클립웬스)	118	
2	2022년 8월 증빙자료 미첨부(BT 난간대)	307	
3	2022년 9월 증빙자료 미첨부(BT 전도지지대)	338	
4	2022년 11월 증빙자료 미첨부(사다리 전도지지대)	300	
	제비율	312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전남개발공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18,368,000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신안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신안군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0. 11. 9. 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회사 (대표이사)	공정율
		계	도급액	관급자재			
○○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L=1.975km (2차로)	4,110	2,549	1,561	2020.11.09.~ 2023.10.31.	(주)○○○○○○○ (○○○)	49%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도로포장 단면(보조기층) 조정 등 설계변경 미조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설계서¹⁾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현장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이 필요할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신안군(○○과)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71,095천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 ○○~○○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	287,842	-	216,747	△ 71,095	제경비 포함
1	방음벽, 교량(수로암거) (합판4회 → 유로폼)	985.2㎡	71,459	985.2㎡	47,177	△24,282	
2	포장(보조기층) 단면 (T=20cm → 15cm)	5,211㎡	201,512	3,908㎡	169,570	△31,942	
3	세륜기 미설치	1식	14,871	-	-	△14,871	

자료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1) (종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등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71,095천원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낭비성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3. 교량³⁾ 접속구간 불량토 치환공 미조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2장 “토공사” 2-4 땅깍기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에 따르면 순성토 구간인 경우 땅깍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치환이 필요할 때에는 흙쌓기 품질기준⁴⁾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토공의 마무리에 규정된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3.9 뒤채움에 따르면 뒤채움 재료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⁵⁾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규정된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교량과 접속된 토공구간의 시공상태가 불량할 경우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안정처리공법을 수행해야 하는 등 공사의 품질 향상과 견실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신안군(○○과)은 교량 접속구간 토공의 다짐상태가 [사진]과 같이 부적합할 경우 양질의 재료로 치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위치) No 74+00, (제원) : L=14.0m, B=13.2m

4) (노상) 최대치수 100mm이하, 수정 CBR 10이상, 5mm체 통과율 25~100%, 소성지수 10이하 / 다짐도 95% 이상

5) 다짐시험 시 흙이 가장 밀도 있게 다져지는 함수비를 말함(흙의 다짐곡선에서 최대건조밀도에 해당되는 함수비)

[사진] 교량 접속구간 불량토 치환공 미조치 현황

교량 접속구간 민간합동 기동감사 현장점검(2023. 6. 12.) - 불량토 치환공 미조치	

그로 인하여 구조물(교량) 접속구간에 대한 불량토 치환을 하지 않은 채 후속 공종을 추진할 경우 침하 발생으로 부실 시공이 우려되고, 공용 시 통행 안전과 건설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신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71,095,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고, 교량 접속구간 불량토를 제거한 후 양질의 토사 210m³를 치환하여 재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완도 ○○○○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완도군(○○○○○○관)

내 용

1. 업무개요

완도군은 ○○○○산업 선도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2020. 12. 31.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 역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완도 ○○○○센터 건립공사	1동, 7,740㎡	23,222	12,371	10,850	2020.12.31.~ 2023.07.31.	(주)○○○○ ○○ (○○○)	공사
완도 ○○○○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28개월	1,283	1,283	-	2021.03.02. ~ 2023.07.31.	(주)○○○○ ○○○ (○○○)	감리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축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13장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은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관)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15,969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4건	-	16,891	-	922	△ 15,969
1	조립식가설대문 E.G.I. 미설치	2개소	3,145	-	-	△ 3,145
2	규준틀 정산	57개소	6,382	10개소	922	△ 5,460
3	석재면, 타일면 보양(하드롱지) 미시공	2,444㎡	3,174	-	-	△ 3,174
4	방수층 보호재 미시공	516㎡	4,190	-	-	△ 4,190

자료 : 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점검 및 기성검사 참석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완도군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건설공사에 대해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지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완도군(○○○○○○관) 공사관리관²⁾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 점검 8회³⁾ 중 8회, 기성검사 7회⁴⁾ 중 7회 모두 참석

1)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2) ○○○(2020.12.31.~2021.01.03.), ○○○(2021.01.04.~2022.09.04.), ○○○(2022.09.05.~현재)

3) 합동 점검 1차(2021.03.29.), 2차(2021.06.28.), 3차(2022.01.24.), 4차(2022.04.15.), 5차(2022.07.25.), 6차(2022.10.27.), 7차(2023.01.11.), 8차(2023.04.18.)

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완도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15,969,000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합동 점검과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 기성1차(2021.12.22.), 기성2차(2022.04.08.), 기성3차(2022.06.29.), 기성4차(2022.09.01.), 기성5차(2022.11.17.), 기성6차(2023.01.11.), 기성7차(2023.04.06.)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영암군(○○○○소)

내 용

1. 업무개요

영암군은 ○○면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 7. 23.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 역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L=23.532km	14,083	10,352	3,731	2021.07.23.~ 2024.12.31.	○○○○(주) (○○○)	공사
○○및○○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42.23 개월	2,004	2,004	-	2021.06.24.~ 2024.12.31.	(주)○○외 1개사 ¹⁾ (○○○)	감리

자료 : 영암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

1) (주)○○(○○○ / 55%), (주)○○○○○○○○(○○○ / 45%)

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설계서²⁾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현장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암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종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영암군(○○○○소)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세류시설 미설치 및 맨홀명판 삭제 등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38,686천원을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 ○○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 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38,686	-	-	△ 38,686	제경비 포함
1	세류시설 미설치	1식	25,422	-	-	△25,422	
2	맨홀명판 미설치	437개소	13,264	-	-	△13,264	

자료 : 영암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된 38,686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38,686천원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낭비성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영암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암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38,686,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목포 ○○○ ○○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목포시(○○○○○○○단)

내 용

1. 업무개요

목포시는 전국체전(배구) 대비 및 장애인 좌식 배구 경기장 마련을 위하여 2022. 9. 8.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를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 역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목포 ○○○ ○○센터 건립공사(건축,기계)	1동, 2,330㎡	6,819	4,205	2,614	2022.09.08.~ 2023.09.07.	○○○○(주) (○○○)	공사
목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48개월	3,641	3,641 ¹⁾	-	2019.08.22.~ 2023.07.31.	(주)○○○○ ○○○○○○ ○○○○○ (○○○) 외 4개사 ²⁾	감리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축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1) 목포○○○○○○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통합 감리 수행중, ○○○ ○○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반영분(208 백만원)
- 2)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36.3%, (주)○○○○○○○건축사사무소(○○○) 27.2%, (주)○○엔지니어링(○○○) 27.2%, (주)○○○○엔지니어링(○○○) 5.3%,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목포시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목포시(○○○○○○단)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23,721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4건	-	46,264	-	22,547	△ 23,721
1	가설창고 정산	5개소	6,794	4개소	5,436	△ 1,358
2	구조부 먹매김 미시공	1,065m ²	1,781	-	-	△ 1,785
3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설계오류 수정	1,878m ²	33,289	965m ²	17,111	△ 16,178
4	가설구조물 구조안전확인비 정산 (31m 비계, 가설울타리)	2회	4,400	-	-	△ 4,400

자료 : 목포시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관리관 현장 합동점검 참석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³⁾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을 파악·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목포시 공사관리관은 품질현장관리 및 현장시공 상태 등을 총괄적으로 분기별로 참석하여 기술지원기술인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목포시(○○○○○○단) 공사관리관⁴⁾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분기별 실시한 현장 합동점검 총 3회⁵⁾ 중 3회 모두 참석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목포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목포시장은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3)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4) ○○○(2022.09.08.~2023.01.16.), ○○○(2023.01.17.~현재)

5) 합동 점검 1차(2022.09.21.), 2차(2022.12.21.), 3차(2023.03.16.)

23,721,000원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합동 점검에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천 하천재해예방사업(3단계)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구례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구례군은 ○○면 일원의 ○○천 연안의 농토 및 가옥을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23. 1. 16.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등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단계)	L=1.66km	15,812	8,377	7,435	2023.01.16.~ 2026.01.14.	(주)○○○○ (○○○)	공사
○○천 하천재해 예방사업(3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1,943	1,943	-	2023.01.26.~ 2026.01.09.	(주)○○외 1개사 ¹⁾ (○○○)	감리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4-다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

1) (주)○○(○○○ / 70%), (유)○○(○○○ / 30%)

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설계서²⁾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현장과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종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구례군(○○과)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세륵 시설 설치 및 전석혈기 수량 오기 등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현장 여건과 상이하여 공사비 35,410천원을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천 하천재해예방사업(3단계) 설계변경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3건	-	55,203	-	19,793	△ 35,410	제경비 포함
1	되메우기 및 다짐 (기계90%+인력10%→기계100%)	1,773m³	16,200	1,773m³	12,400	△ 3,800	
2	고호우2지구 전석혈기 수량 오류	443m³	11,103	294m³	7,393	△ 3,710	
3	세륵세차시설 삭제	2개소	27,900	-	-	△27,900	

자료 : 구례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 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은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된 35,41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35,410천원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낭비성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구례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구례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35,410,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순천 ○○○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순천시(○○○○과)

내 용

1. 업무개요

순천시는 ○○동 일원 생활권역 내 문화·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22. 7. 13.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순천 ○○○ 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1동, 6,910㎡	18,445	14,227	4,218	2022.07.13.~ 2023.12.27.	○○○○(주) (○○○) 외 2개사 ¹⁾	공사
순천 ○○○ 센터 건립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18개월	1,374	1,374	-	2022.08.01. ~ 2024.02.29.	(주)○○○○ ○○○○○ ○(○○○) 외 1개사 ²⁾	감리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건축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1) ○○○○(주)(○○○) 50%, (주)○○○○(○○○) 25%, ○○○○○○○○○(주)(○○○) 25%

2) (주)○○○○○○○○○○○○○○○○○○○○(○○○) 77.1%, ○○○○○○○○○○○○○○○○○○○(주)(○○○) 22.9%

한다)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 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거나 시공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순천시(○○○○과)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 [표 2]와 같이 설계 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총공사비 38,663천원을 설계 변경 감액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4건	-	266,388	-	227,725	△ 38,663
1	기준틀 미시공	28개소	3,906	-	-	△ 3,906
2	사토 운반거리 정산 (10km→5.8km)	16,521 m³	132,700	16,521 m³	104,654	△ 28,046
3	견적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처리 (천장패널, 알루미늄띠장)	2식	85,675	2식	84,092	△ 1,583
4	운반비 정산(시멘트 20km→9km, 철근 20km→12.5km)	2식	44,107	2식	38,979	△ 5,128

자료 : 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3. 공사관리관 현장 기성·준공검사 미참석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³⁾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2조 제6항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공사관리관 입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12조 제11항에 따르면 공사관리관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등을 위해 공사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 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입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 공사관리관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 건설공사에 대해 분기별로 기술지원기술인과 함께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순천시(○○○○과) 공사관리관⁴⁾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 합동 점검 3회⁵⁾ 중 2회, 기성·준공검사 3회⁶⁾ 중 3회 모두 참석하지 않아 공사관리관의 업무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문제점 파악 등 발주

3)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

4) ○○○(2022.07.13.~현재)

5) 합동 점검 1차(2022.11.23.) 미참석, 2차(2023.03.23.) 미참석, 3차(2023.06.13.) 참석

6) 기성1차(2022.12.27.), 기성2차(2023.03.30.), 1차분 준공(2023.05.16.)

청의 건설공사 총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순천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순천시장은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라 과다계상된 38,66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공사관리관은 합동 점검과 기성·준공검사에 입회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과)는 2020. 4. 22.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회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L=3.4km	7,784	6,168	1,616	2020.04.22.~ 2023.12.20.	(주)○○ ○○○○ (○○○)	공사
○○ ○○○○ 확포장공사 등 3개지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48개월	2,468	2,468	-	2020.09.01.~ 2024.08.10.	(주)○○ 외 2개사 ¹⁾ (○○○)	감리

자료 : 전라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1) (주)○○(○○○/40%), (주)○○○○○○○○○○○○○○○○○○○○(○○○/30%), (주)○○○○(○○○/30%)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라남도(○○○○과)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라남도(○○○○과)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32,198천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190,182	-	157,983	△32,198	
1	가시설공 마대쌓기및헐기 조정 (PP마대→툰마대)	1,410㎡	80,679	1,410㎡	73,921	△6,758	
2	현장시설공(가설사무소) 면적 조정	430㎡	47,304	357㎡	39,155	△8,148	
	제비율	-	62,199	-	44,907	△17,292	

자료 : 전라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된 32,19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과)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과장)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32,198,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무안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무안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무안군은 2020. 11. 20.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무안 ○○○○산업단지 조성공사(토목)	350,668㎡	8,774	6,277	2,497	2020.11.20.~ 2023.11.30.	(주)○○○○ ○○ (○○○)	공사
무안 ○○○○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7개월	1,105	1,105	-	2021.03.05.~ 2023.07.31.	(주)○○○○○○○○ ○○외1개사) (○○○)	감리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1) (주)○○○○○○○○○○(○○○/65%), (주)○○○○○○○○○○(○○○/35%)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안군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과)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25,05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59,119	-	34,069	△25,050	
1	되메우기및다짐 다짐장비 조정 (플레이트컴팩트→진동로울러)	3,521 m²	7,795	3,521 m²	6,640	△1,155	
2	세륜세차시설	2개소	35,487	1개소	17,744	△17,743	
	제비율		15,837		9,685	△6,152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25,05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기술지원기술인 현장 합동점검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점검을 담당 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르면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5. 나. 16)에 따르면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시공 실태점검 소홀은 별점부과 대상²⁾이라고 되어 있다.

2)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횟수가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1점, 1회 부족한 경우 0.5점으로 규정

따라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이 지정한 시기에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무안군(○○○○과)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시행중인 무안 ○○○○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된 기술지원기술인이 [표 3]과 같이 현장 합동점검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3] 기술지원기술인 현장 합동점검 미실시 현황

연번	분야	기술지원 기술인	투 입 기 간	현장점검 미실시 현황	미실시 횟수
1	도시 계획	○○○	2021.03.05. ~ 2023.07.31.	'21. 6.	1회
2	전기	○○○	2021.03.05. ~ 2023.07.31.	'21. 6. '22. 6.	2회
3	조경	○○○	2021.03.05. ~ 2023.07.31.	'21. 6. '22. 3.	2회

자료 : 무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합동점검을 통한 현장시공 상태의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 부실시공 예방 및 시공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초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무안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무안군수는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25,050,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분기별 합동점검 실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라남도(○○○○과)

내 용

1. 업무개요

전라남도(○○○○과)는 2021. 9. 3.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용역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회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부지조성 16.8천㎡ 등	36,753	33,116	3,637	2021.09.03.~ 2025.12.20.	○○○○(주) (○○○)	공사
○○○○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4.8개월	2,676	2,676	-	2021.09.06.~ 2025.12.31.	(주)○○○○○○○○ 와 1개사 ¹⁾ (○○○)	감리

자료 : 전라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1) (주)○○○○○○○○(○○○/60%), (주)○○○○○○○○(○○○/40%)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라남도(○○○○과)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라남도(○○○○과)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28,000천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294,000	-	266,000	△28,000	
1	접안시설공 기초굴착 면적 조정	9,203㎡	241,805	8,553㎡	224,727	△17,078	
2	블록제작 부지임대료 조정	1식	6,383	-	-	△6,383	
	제비율	-	45,812	-	41,273	△4,539	

자료 : 전라남도(○○○○과)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은 공사 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28,00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라남도(○○○○과)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지사(○○○○과장)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28,000,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주의요구

제 목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함평군(○○○○○소)

내 용

1. 업무개요

함평군은 2021. 9. 28.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오수관거(4,629m) 배수설비 129가구	4,416	3,138	1,278	2021.09.28.~ 2024.04.03.	○○○○(주) (○○)	공사 (토목)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35개월	1,478	1,478	-	2021.02.15.~ 2023.12.22.	㈜○○○○○○○○ 외 1개사 ¹⁾ (○○○)	감리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

1) ㈜○○○○○○○○○○○○○○○○○○○○(○○○/70%), ㈜○○○○○○○○○○○○○○○○○○○○(○○○/30%)

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평군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소)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13,51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1건	-	38,270	-	24,757	△13,513	
1	사토운반 (운반거리 미 정산)	3,219m ³ (10km)	24,305	3,219m ³	15,730	△8,575	
	제비율		13,965		9,027	△4,938	

자료 : 함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13,513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차선도색공사 재귀 반사 성능시험 준수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과 「KS M 6080」(2010. 7. 9. 구 행정안전부령 제147호) 그리고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재귀 반사²⁾성능이 요구되는 도로상의 노면 표시용 도료를 설치 시 시공 직후 1주일 후에 재귀 반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0km 이내의 경우 1km당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 20개소를, 10km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하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표 6]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 반사 성능 기준 현황”과 같이 90%이상의 재귀 반사 성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6] 도료형 노면표시 재귀 반사 성능 기준 현황

(단위 : mcd/㎡·LUX)

구 분	최소 재귀 반사 성능			비고
	황색	백색	청색	
설 치 시	240	150	80	기준
우천(습윤시)	100	70	40	권장

자료 : 「도로공사표준시방서」(2015. 9.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1호) 재구성

따라서 함평군에서는 2022. 9. 2. 실시한 차선도색에 대하여 1주일 후에 재귀 반사 성능을 검사하여 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처리를 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함평군(○○○○○소)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재귀 반사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2022. 11. 8.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준공계를 접수 받아 2022. 11. 11.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2) 광원에서 입사된 빛을 받으면 광원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 반사하는 것

그로 인하여 신규 차선도색이 재귀 반사 성능 기준에 적합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야간이나 우천 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증가 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함평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함평군수는

- ①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13,513,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노면표시가 포함된 차선도색에 대하여 휘도검사 후 준공을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나주시(○○○○과)

내 용

1. 업무개요

나주시는 2020. 1. 6.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급회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소하천 정비공사	L=1.68km	6,163	3,072	3,091	2020.01.06.~ 2023.10.29.	○○○○ ○○(주) (○○○)	건설 공사
○○ 소하천 외 1개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1,307	1,307	-	2020.06.09.~ 2024.01.12.	(주)○○○○○○○○ 외 1개사 ¹⁾ (○○○)	건설 사업 관리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1) (주)○○○○○○○○○○(○○○/70%), (주)○○○○○○○○○○(○○○/30%)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나주시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나주시(○○○○과)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12,830천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1건	-	12,830	-	-	△12,830	
1	시공상세도(철근 복잡)	35장	10,983	-	-	△10,983	
	제비율	-	1,847	-	-	△1,847	

자료 : 나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12,83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나주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나주시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12,830,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장흥군(○○○○소)

내 용

1. 업무개요

장흥군은 2020. 7. 3.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 시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용역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금액	관급자재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관로 L=20km 가압장 3개소	4,919	2,936	1,983	2020.07.03.~ 2023.12.10.	○○○○○○(주) (○○○)	공사
○○,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1개월	1,229	1,229	-	2022.04.21.~ 2024.01.10.	(주)○○○○○○○ 외 1개사 (○○○)	감리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흥군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장흥군(○○○○소)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5,770천원을 설계 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적내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2건	-	56,738	-	50,968	△5,770	
1	현장사무소 미정산	430	46,800	410	44,470	△2,330	
2	물푸기 미시공	160	2,095	0	-	△2,095	
	제비율		7,843		6,498	△1,345	

자료 : 장흥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주)○○○○○○ 소속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는 공사현장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5,77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장흥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장흥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5,770,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면 ○○○○○공원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진도군(○○○○과)

내 용

1. 업무개요

진도군은 2022. 6. 15.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면 ○○○○○공원 정비사업	하천정비 L=0.775km	3,136	2,728	408	2022.06.15.~ 2024.06.13.	○○○○(주) (○○○)	공사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도군 공사감독관은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진도군(○○○○과)은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42,550천원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

[표 2]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미감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계	8건		55,770		13,220	△42,550	
1	되메우기및다짐 다짐 미시공 (플레이트컴팩터)	2,307m³	10,776	2,307m³	2,681	△8,095	
2	흙쌓기(제체) 일부 공정 미시공 (살수, 롤러 다짐)	1,796m³	3,520	1,796m³	1,641	△1,879	
3	층따기 미시공	688m³	1,201	-	-	△1,201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비고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4	비탈, 수평기준틀 미시공	73개	4,864	-	-	△4,864	
5	뒷채움잡석 부설및다짐 미시공 (플레이트컴팩터)	1,918m³	6,048	1,918m³	2,681	△3,367	
6	기초잡석부설 일부 공정 미시공 (살수, 롤러 다짐)	502m³	5,732	502m³	2,411	△3,321	
7	이동식세륜기 미시공	1개소	6,471	-	-	△6,471	
8	품질시험비 미 실시	1식	440	-	-	△440	
	제비율		16,718		3,806	△12,912	

자료 : 진도군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진도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도군수는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42,550,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전라남도 시정요구

제 목 여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1공구) 추진 부적정

관계기관(부서) 전남개발공사(○○○○단)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개발공사는 2020. 5. 13. 부터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사업기간	도 급 사 (대표이사)	비고
		계	도급액	관급자재			
여수 ○○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공구	372,000㎡	38,285	26,466	11,819	2020.05.13.~ 2024.02.21.	○○○○○(주) (○○○)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추진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의 업무 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과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제7절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사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지적사항을 미리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접수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개발공사(○○○○단)는 2023. 6. 23.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상이하여 공사비 25,707천원을 설계변경 감액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설공사 설계변경 미 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 적 내 용	당 초		변 경		공사비 증·감 (B-A)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합계	4건		63,558		37,851	△25,707
1	오수공 되메우기(램머→콤팩트)	1,375	38,346	1,373	31,372	△6,974
2	경고테이프연장 조정	28,754	3,289	19,168	2,189	△1,100
3	절토사면 배수공 조정	196	14,135	-	-	△14,135
4	추진물탈 형식 변경(현장비빔→기성제품)	21	7,788	21	4,290	△3,498

자료 : 전남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로 인하여 오수공 되메우기 장비 등 시공 확인에 대한 판단 불확실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 25,707천원이 설계변경 감액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개발공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25,707,000원을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